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57

2017년 4월 24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창수 의원 외 9명
나. 제 안 일 : 2017년 4월 6일
다. 회 부 일 : 2017년 4월 7일
라. 상 정 일 : 제27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4월 24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창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새로운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도 서울시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선점하고, 세계에서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민·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상 강화
-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

2)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3)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

4)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3조 제4호),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시키며(안 제7조 제3항),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안 제11조) 한편,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지원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하고(안 제28조의 2),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9조)하고자 하는 것임.

가.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추가 신설(안 제3조)

○ 안 제3조제4호 추가 신설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원칙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및 국제적 재난, 재해 등 다양성 사회에서 수반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첨단기술의 선제적으로 적용하려는 의지 표명으로 보여짐.

○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기술·정보·지식 기반의 서비스·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사회이며, 사회전반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로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정보·지식 기반의 시민(수요자)이 중심인 세계적인 선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정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측면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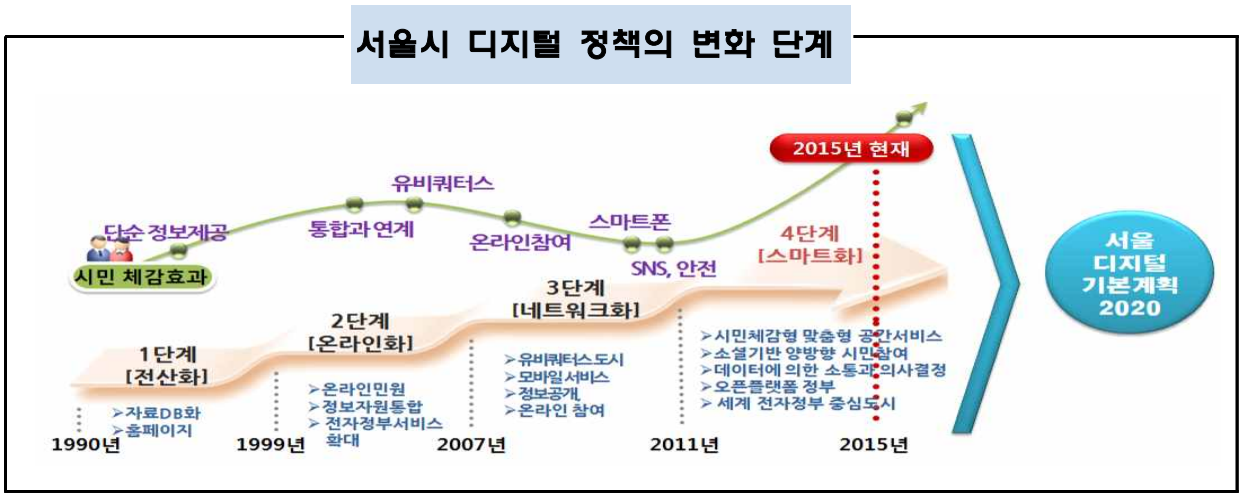

나.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격상(안 제7조)

○ 안 제5조 부터 제7조는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조정 등의 심의 역할 등을 하는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명칭을 '위원회'로 약칭하고(안 제5조, 제7조제1항),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 연혁 >

○ 1997.11.17 **정보화사업자문위원회** (50명)
○ 1998.09.25 **정보화추진위원회 출범** (18명)
※ 1998.03.10 정보화촉진조례 제정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1999.07.29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회 보강** (27명)
○ 2003.04.15 **정보화촉진조례 개정** (위원장 : 정보화기획단장)
※ 2003.05.28/2005.06.16/2007.07.01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촉 30명 ▸ 29명
○ 2009.03.18 **정보화촉진조례 개정** (위원장: 행정1부시장)
○ 2010.01.07 **정보화기본조례** (전부개정)
※ 위원회 명칭변경(정보화추진위원회 ➡ 정보화전략위원회)
○ 2010.04.09 **정보화전략위원회 출범** (31명)
○ 2012.08.14 **정보화전략위원회 재구성** (25명)
○ 2012.05.25 **정보화전략위원회 2명 위원 추가**
○ 2012.08.14 **정보화전략위원회 재구성 (25명)**
○ 2013.05.23 **정보화전략위원 2명 신규 위촉 (27명)**
※ 고삼석 위원(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임 : '14.4.16 (26명)
○ 2014.10.30. **정보화전략위원회 재구성 (31명)**
○ 2015.05.23. **정보화전략위원회 2명 임기만료 (29명)**

○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안 제7조제3항은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2013년 이후 연 2, 3회 개최되는 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10조의(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개정 없이 여러 일정이 많은 '시장' 참석이 위원회 개최 및 실행력 담보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예산총액	건수	예산총액	건수	예산총액	건수	예산총액	건수	예산총액	건수	예산총액
5	10,464	3	9,360	3	8,160	2	7,250	3	7,100	1	8,320

※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제10조의 정기회의 개최 시기 확대에 대한 개정 필요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현행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분과위원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2.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3.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개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 의결을 거쳐**----------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④ (현행과 같음)

○ 개정 취지는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기술이 시정 각 분야에 확대 적용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기능의 필요성이 요구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기에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최근 제정된 조례에 대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

‣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행정기구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전략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역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검토의견**

- 향후 조례간 일관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중 정보화전략위원회의 기능에 본 조례안의 '웹접근성위원회' 기능을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

○ 다만,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분과위원회 개최실적이 단 2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조례에서 관련 분과위원회의 자의적 운영이 회의개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시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실적('13~'16년)〉

○ 개최실적 : 총 2회

개최일자	회 의 안 건	주요내용	참석(명)
'15.2.12	**스마트도시 분과회의**	서울디지털마스터플랜 선행연구	5
'13.5.23	**유비쿼터스도시사업 분과회의**	마곡 U-City 사업계획서 및 실시계획서 검토	3

※ '13.8월 조례개정으로 유비쿼터스도시 분과는 스마트도시 분과로 변경

○ 또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정보화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위상 강화(안 제28조의2)

○ 안 제28조의2는 서울시가 주도하여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교류·촉진을 위하여 2010년 창립한 국제기구인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의 지원 조직인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참고자료 ③ 참조).

※ WeGO(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World e-Governments Organization of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 2010년 서울시 주도 창립, 서울시 의장도시 3회연임 (2010~2017)

○ 현재 회원도시는 101개 도시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협의체 지원을 위한 사무국을 서울 소재 사무소에(서울글로벌센터 10층) 두고,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한 직원9명이 협의체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운영예산은 11억8천만원으로, 전액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음.

〈 WeGO 사무국 일반현황 〉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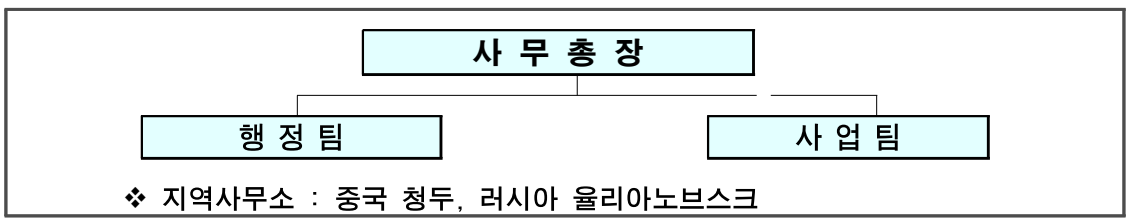

○ 회 원 : 101개
※ 아시아 40, 아프리카 23, 유럽 15, 미주 7, 중동 등 16)

○ 인 력 : 총10명(사무총장1, 직원9)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8 서울글로벌센터 10층

○ 2017년 예산 : 1,180,987천원

○ 협의체 회원국 증가 및 사무국 역할 확대 요구에 따라 회원도시간 네트워킹 활성화, 국제기구와 협력강화, WeGO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이미 WeGO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향후 조례 개정 전에 자의적 운영을 하는 행정행태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29조)

○ 안 제29조제3항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부는 서울시 정보자원(H/W)에 대한 구매 예산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여 데이터센터로 재배정하여 집행하는 등의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데이터센터에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 정보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 예산편성 방법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고 있음.

※ (현행) 정보자원(H/W)에 대한 구매 예산 각 부서 편성하여 데이터센터 재배정

➡ (개정) 데이터센터 통합 편성

현 행	개 정 안
제29조(통합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9조(통합센터 운영) ① 시장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 다만,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이용 등과 관련된 안 제3항 신설규정은 현행 제29조제1항과의(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정보통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중복 규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입법취지대로 정보통합센터에서 정보자원을 통합·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7

발의연월일: 2017년 4월 6일
발 의 자: 김창수, 김용석(도봉), 김인호, 김현기, 김희걸, 문영민, 박호근, 서윤기, 이명희, 이순자 의원(10명)

1. 제안이유

새로운 초연결 디지털 시대에도 서울시가 디지털 분야 리더십을 선점하고, 세계에서 디지털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민과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 디지털 기본계획 20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위상 강화
 -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시장에서 서울시장으로 격상
나. 정보화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정책환경과 시정방향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운영
다. WeGO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
라.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1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총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3 (생 략) 〈신 설〉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3 (현행과 같음) 4.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기술의 선제적 적용 및 확산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자치구의 정보화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5조(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① 시장은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언론계·기업계·민간단체·시의원·공무원 중에서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⑦ (생 략)	제7조(위원회) ①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 ④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현 행	개 정 안
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전자정부 분과위원회 2. 스마트도시 분과위원회 3. 정보보안 분과위원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보화책임관)	제14조(정보화책임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기획단장이 된다.	②----------정보기획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① (생 략)	제28조의2(세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사무국의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협의체 사무국장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세계도시 간 공동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 ---------- ------사무총장---------- ---------- ---------- ----------
③ 협의체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해당 사업 연도의 협의체 사업계획서를 해당 사업 연도 개시 5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가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무총장---------- ---------- ---------- ---------- ---------- ---------- ----------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 사무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무총장---------- ---------- ----------
제29조(통합센터 운영)	제29조(통합센터 운영)
①,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정보자원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구축·관리할 수 있다.